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김선교
김위상 · 신동욱 · 최수진
박덕흠 · 박준태 · 이만희
강대식 · 정동만 · 배준영
정점식 · 강명구 · 김도읍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크거나”를 “크고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u>크거나</u>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u>크고 외국산</u> <u>수입비율이 높아</u>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u>3년마다</u>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